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89 호】

2014년 07월 08일 (화)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33호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34호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35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203호	도로명주소 고시	76
고양시 고시 제2014-204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78
고양시 고시 제2014-205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81
고양시 고시 제2014-206호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외 2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82
고양시 고시 제2014-20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84
고양시 고시 제2014-208호	도시계획시설(대로1-9호선 내 지하철도신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85
고양시 고시 제2014-209호	탄현주공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86

공 고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 양 시 시 보

제 1089호

고양시 덕양구 공고 공인 등록 공고
제2014-291호

88

고양시 덕양구 공고 공인 등록 공고
제2014-293호

89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천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7 월 8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 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사업으로 함
- 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기간 규정
- 다.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규정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4년 7 월 28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217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등) ① 「고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지원 사업
 - 가. 대학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고양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규격, 재질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행정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화
	팀 장 성 명	예산관리팀장 홍 길 표
	담 당 자 성명·전화	김선희 (8075-2172)

(별표)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규격 및 재질(제4조 관련)

1. 건설표지판

- 기재문구 : 이 공사는 고양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재위치 : 상단 또는 하단

기재 문구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 사 금 액		보 조 금 액	국비 시비
착 공 연 월 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보조금제공자 :
보조 사업명 :
보 조 금 액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이 시설은 고양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보조금제공자 :

보조 사업명 :

보 조 금 액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이 시설은 고양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4. 규격 및 재질

규 격	재 질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비고: 글씨체 및 색체는 알아보기 쉽게 작성

관계법령 발췌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 월 8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21호, 2013.6.17.공포)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여 세부사항의 범위를 설정하고,
-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보조금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 설정 및 필수 설치 시설의 면적 규정 신설
- 나.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신설

다. 심사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신설
라.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사항'을 신설
마.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과 동일한 정의로 규정
바.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삭제
※ 과태료에 따른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주요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7월 28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311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택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주택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택건설기준 등

제2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3. 어린이놀이터
 -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4. 작은 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5.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적용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8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 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사업자를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고양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

한다.

1. 보조금 신청내용의 법령 적합 여부
2.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의 적합 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 및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검토 내용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
5.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적합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실시하며, 이 경우 시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양시 예산 및 주택업무 담당국·과장
2. 고양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4.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
 -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법령 적합여부
 - 나. 보조금 지원순위 결정
 - 다. 보조금 교부대상 단지 결정
 - 라.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2.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공무원 및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 중에 심사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사 시 참여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회는 지원할 보조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주민 수혜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2. 시설물 노후 및 보조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우선순위
- 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건수,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이하 “실무 검토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 팀장을 구성원으로 보며, 이 경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당연 포함 하도록 한다.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 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11조(정산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을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실무 검토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준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서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우수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하여 포상한다.

④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 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16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주택업무 담당국장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분쟁발생단지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의 위원 중 분쟁발생단지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이해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서면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22조(조정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정신청내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

유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조정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①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따라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2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시장 또는 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들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26조제2항에 따른 제시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주 택 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주택과장 강 기 수
	팀 장 성 명	주택1팀장 이 상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재 용 (8075-3112)

중요사항 개정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주택건설기준 등</u></p> <p><u>제2조(주민공동시설)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u>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u></p> <p><u>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u></p> <p><u>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p> <p><u>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u></p> <p><u>2. 어린이집</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u></p> <p><u>3. 어린이놀이터</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u></p>

현 행	개 정 안
	<p>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 <u>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 한 면적</u></p> <p>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 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p> <p>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 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p> <p>5.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 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p>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신 설>	<p>제6조(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 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 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 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 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제4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 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 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u>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u>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사업자를 선정 후 <u>별지 제1호서식</u>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는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u>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한다.</u></p> <p>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u>당해</u>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u>제3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u></p> <p><u>제13조(기능)</u>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u>소송중인</u>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u>2이상</u>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제외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6. (생략)</p> <p>7.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p>	<p><u>제7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u> ----- ----- ----- <u>국토교통부</u>----- ----- -----<u>별지 제2호서식</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실시하며, 이 경우 시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④ ----- <u>제2항에 따라</u>----- ----- <u>해당</u> -----.</p> <p>⑤ (현행과 같음)</p> <p><u>제4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u></p> <p><u>제15조(기능)</u> ----- ----- --. --- <u>소송 중인</u> ----- ----- ----- <u>2 이상</u>-----.</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8. 그 밖에 -----</p>

현행	개정안
<p>제14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p> <p>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p> <p>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p> <p>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p> <p>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p> <p>5. 고양시 주택업무 관련 국장</p> <p>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6조(구성 등) ① ----- -----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명으로 하되, 시 소속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의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p> <p>1. 주택업무 담당국장</p> <p>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p> <p>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분쟁발생단지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의 위원 중 분쟁발생단지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서 복권되지 아니한 <u>자</u></p> <p>2. <u>금고이상</u>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u>자</u></p> <p>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u>자</u></p> <p>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 이 정지된 <u>자</u></p> <p>⑥ (생략)</p> <p><u>제18조</u>(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 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u>3인</u>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 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u>당사자중에서 3인</u>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조정위원회는 <u>제1항의</u> 규정에 따라 <u>소정의 기간내에</u>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 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중 3인 이 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사자들은 그 사실을 <u>지체없이</u> 조정위원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 <u>사람은</u> -----.</p> <p>1. ----- ----- <u>사람</u></p> <p>2. <u>금고 이상</u>----- ----- ----- ----- <u>사람</u></p> <p>3. ----- ----- <u>사람</u></p> <p>4. ----- ----- <u>사람</u></p> <p>⑥ (현행과 같음)</p> <p><u>제20조</u>(대표자의 선정 등) ① ----- ----- ----- <u>3명</u> ----- ----- ----- ----- <u>당사자 중에서 3명</u> ----- -----.</p> <p>② ----- <u>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u> <u>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u> <u>경우에는 당사자 중 3명</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지체 없이</u> ----- -----.</p>

현행	개정안
제4장 과태료의 징수절차	<삭 제>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101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삭 제>
제33조(과태료부과금액의 기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영 제122조제3항 별표13에 의한다.	<삭 제>
제3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영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입통지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횡수 등을 참작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원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p>⑤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7조(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택조례」를 준용한다.</p>	<p><삭 제></p>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 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1천만원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비고>

- 보조금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하여만 지원함.
-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 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
(제6조제1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공사 및 용역 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2. 자문분야

공 사 부 문	용 역 부 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그 밖의 사항	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그 밖의 사항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3. 자 문 료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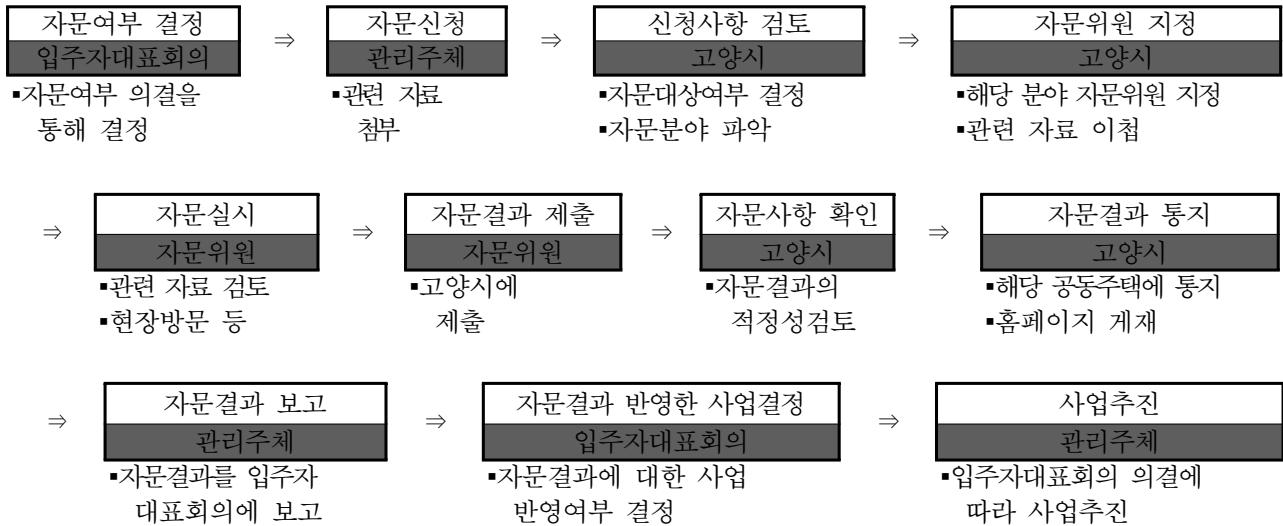
4. 자문절차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앞면)

– 35 –

(뒷면)

□ 자문절차



□ 처리기한 : 1개월

□ 자 문 료 : 무료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고양시청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의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계약금액	계				
	시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계약 업체명(연락처)					
사업 기간					
「고양시 주택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2. 사업계획서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등					
※ 구비서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등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신청자	단 지 명				
	주 소				
정 산 내 용					
사 업 명					
정산금액	계				
	시 보조 금액				
	자체부담 금액				
공사 업체명(연락처)					
착 공 일			준 공 일		
<p>「고양시 주택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end;">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end;"> (전화 :) </div> <p>고양시장 귀하</p>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3. 공사 전·중·후 사진 4.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피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당사자간 협의 진행사항				
첨 부 서 류				
<p>「고양시 주택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날인) </p> <p style="margin-top: 40px;">고양시장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분쟁조정안

아래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고양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는 분쟁의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고양시 주택 조례」 제26
조제1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양시장

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피신청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조정내용				

□ 관계법령 발췌서

< 주택법 >

[시행 2014.5.23.] [법률 제11794호, 2013.5.22., 타법개정]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16.>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한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3.]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⑨ 삭제 <2013.6.4.>

[전문개정 2009.2.3.]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 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81호, 2014.6.11., 일부개정]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주택법 시행규칙 >

[별표 5] <개정 2012.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1. 건물외부

구 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가. 지붕	(1)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5	20	시멘트액체방수
		전면수리	10	100	
	(2) 쿡자갈 깔기	부분수리	5	15	단열층 및 보호층 포함
	(3)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5	
	(4) 아스팔트방수층	부분수리	8	10	
		전면수리	20	100	
	(5) 고분자도막방수	부분수리	5	10	
		전면수리	15	100	
	(6) 고분자시트방수	부분수리	8	20	
		전면수리	20	100	
나. 외부	(1)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8	15	
		전면수리	20	100	
	(2)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전면수리	20	100	
	(3) 인조석 씻어내기	부분수리	8	15	
		전면수리	30	100	
	(4)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8	10	
		전면수리	30	100	
다. 외부 창·문	(1) 철제창·문	부분수리	25	5	창 호 철 물 은 제외
		전면교체	5	100	
		전면교체	30	100	
	(2) 알루미늄창·문	부분수리	10	10	
		부분수리	10	20	
		전면교체	25	100	

라. 그 밖의 부분	(3) 유성페인트칠	전면도장	5	100	철재(鐵材)부분 철재부분
		전면녹막이	5	100	
	(4) 합성수지페인트칠	전면도장	6	100	
		전면녹막이	12	100	
	(1) 지붕낙수구	부분수리	5	10	주물재 또는 PVC 제품
		전면교체	25	100	
	(2) 홈통	부분수리	6	10	
		전면교체	28	100	
	(3)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4) 철제피난계단	부분수리	7	15	
		전면교체	30	100	
	(5) 무동력흡출기	부분수리	5	20	
		전면교체	10	100	

2. 건물내부

구 분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가. 천장	(1)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전면수리	30	100	
	(2) 모르타르 마감	전면수리	30	100	
	(3) 보드류	전면수리	25	100	
	(4)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5)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6)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6	100	
나. 내벽	(1) 회반죽 마감	부분수리	7	20	
		전면수리	30	100	
	(2) 보드류	전면수리	20	100	
	(3)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15	
		전면수리	20	100	
	(4) 벽지	전면수리	10	100	
	(5)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6) 유성도료칠	전면도장	5	100	
	(7) 합성수지도료칠	전면도장	6	100	
	(8) 칸막이벽(목재)	부분수리	10	15	
	(9) 칸막이벽(경량철골)	부분수리	10	10	

다. 바닥	(1)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5	15	
		전면수리	20	100	
	(2) 타일 붙이기	부분수리	10	15	
		전면수리	20	100	
	(3)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전면수리	20	100	
	(4) 마루널 깔기	부분수리	7	15	
		전면수리	25	100	
	(5) 아스타일류 깔기	부분수리	5	20	
		전면교체	10	100	
라. 내부 창·문	(1) 알루미늄창·문	창·문틀수리	10	10	
		창·문수리	10	10	
		창·문교체	25	100	
	(2) 목제창·문	창·문틀수리	10	20	
		창·문수리	10	20	
		창·문교체	20	100	
마. 계단	(3) 프라스틱창·문	부분수리	10	10	
		전면교체	25	100	
	(1) 인조석 깔기	부분수리	10	5	
		전면수리	20	100	
	(2) 모르타르 마감	부분수리	5	15	
		전면수리	20	100	
	(3) 바닥아스타일깔기	부분수리	5	20	
		전면수리	10	100	
	(4) 계단논슬립	전면교체	20	100	
	(5) 철제난간	전면교체	25	100	
바. 그 밖의 부분	(6) 스테인레스난간	부분수리	10	5	철제 및 목제 혼합난간 포함
		전면도장	5	100	
	(7) 유성페인트칠	전면도장	5	100	
바. 그 밖의 부분	단열층(벽·천장)	부분수리	15	20	보호층 포함 (중공벽 단열층 제외)
		전면수리	50	100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구 분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	---------	------	---------	--------	-----

가. 예비전원 (자가발전) 설비	(1) 내연기관	부분수선	10	30	
		전면교체	30	100	
	(2) 발전기	부분수선	10	30	
		전면교체	30	100	
	(3) 냉각수탱크	전면교체	15	100	
	(4) 기름탱크	전면교체	20	100	
	(5) 배전반	부분교체	10	10	
		전면교체	20	100	
나. 변전설비	(6) 자동제어반	전면교체	20	100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7) 축전지	전면교체	5	100	
	(1) 변압기	부분교체	10	25	
		전면교체	25	100	
	(2) 축전지	전면교체	5	100	
	(3) 수전반	부분교체	10	10	
		전면교체	20	100	
	(4) 배전반	부분교체	10	10	
다. 옥내배전 설비		전면교체	20	100	
	(5) 유도전압조정기	전면교체	20	100	
	(6) 충전기	부분수선	10	10	
		전면교체	20	100	
	(7) 전력케이블	전면교체	30	100	
	(8) 전선관(노출강 관)	전면교체	30	100	
	(1) 스위치	전면교체	6	100	
	(2) 콘센트	전면교체	6	100	
라. 자동화재 감지설비	(3) 배선배관	전면교체	20	100	고효율에너지기
	(1) 감지기	부분수리	5	20	
		전면교체	20	100	
	(2) 수신반, 중계기	부분수리	5	20	
	(3) 비상경보세트	전면교체	20	100	
		부분수리	5	20	
	(4) 유도등	전면교체	20	100	
		부분수리	5	30	

	(5) 비상콘센트	전면교체	10	100	자재 인증 LED 유도등 적용
		부분수리	5	20	
		전면교체	15	100	
마. 소화설비	(1) 소화펌프	부분수리	5	10	
		전면교체	20	100	
	(2) 모터	전면교체	20	100	
	(3) 내연기관(엔진)	전면교체	25	100	
	(4) 소화기구	전면교체	20	100	
	(5) 스프링클러	전면교체	25	100	
	(6) 급수전	전면교체	15	100	
	(7) 급수관방로피복	전면교체	15	100	
바. 승강기 및 인양기	(1) 기계장치	전면교체	15	100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전면교체	5	100	
	(3) 제어반	부분수리	5	20	
		전면교체	15	100	
	(4) 조속기	전면교체	10	100	
	(5) 도어개폐장치	부분수리	5	20	
		전면교체	15	100	
	(6) 레일가이드슈	전면교체	5	100	
사. 피뢰설비 및 옥외전 등	(1) 피뢰설비	부분수리	10	10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 적용
		전면교체	25	100	
	(2) 보안등	부분수리	5	25	
		전면교체	25	100	
아. 통신 및 방송설비	(1) 케이블	전면교체	30	100	
		부분수리	5	20	
	(2) 앰프 및 스피커	전면교체	15	100	
	(3) 방송수신 공동 설비	부분수리	5	20	
		전면교체	15	100	
자. 보일러실	동력반	부분수리	5	25	

및 기계실		전면교체	20	100	
차. 보안·방 범시설	(1) 감시반(그래픽형)	부분수리	5	20	
	(2) 감시반(모니터형)	전면교체	5	100	
	(3) 녹화장치	전면교체	5	100	
	(4)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	전면교체	5	100	
카. 지능형 홈 네트워킹 설비	(1) 홈네트워크망 설비	전면교체	30	100	
	(2) 홈네트워크기기	부분수리	5	20	
	(3)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전면교체	10	100	
		부분수리	5	20	
		전면교체	20	100	

4.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

구 분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가. 급수설비	(1) 급수펌프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0 100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적용(전동 기 포함)
	(2) 고가수조(철판, 콘크리트)	도 장 부분수선 전면교체	3 7 15	100 20 100	
	(3)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부분수선 전면교체	7 25	20 100	
	(4) 급수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5) 급수관(동관, 합성수지관)	부분수선	10	5	
	(6) 유량계	전면교체	8	100	
나. 가스설비	(1) 배관	전면교체	20	100	
	(2) 가스콕크	전면교체	10	100	
다. 배수설비	(1) 펌프	부분수선 전면교체	5 10	10 100	

	(2) 배수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3) 오배수관(주철)	부분수선	10	10	
		전면교체	30	100	
	(4) 오배수관(PVC)	부분수선	5	10	
		전면교체	25	100	
라. 위생기구 설비	(1) 대변기	전면교체	20	100	절수설비 적용
	(2) 소변기	전면교체	20	100	
	(3) 세면기	전면교체	20	100	
	(4) 수세기	전면교체	20	100	
	(5) 세탁조	전면교체	17	100	
	(6) 경사싱크	전면교체	20	100	
마. 환기설비	환기팬	전면교체	10	100	

5. 난방 및 급탕설비

구 분	공 사 종 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 고
가. 난방설비	(1) 보일러	부분수선	5	10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적용 (전 동기 포함)
		전면교체	15	100	
	(2) 급수탱크	전면교체	15	100	밸브류 포함
	(3) 보일러수관	전면교체	9	100	
	(4) 난방순환펌프	부분수선	5	10	
		전면교체	10	100	
	(5) 유류저장탱크	전면교체	20	100	보 온 층 · 바 닥 단열층 및 보 호층포함
	(6) 난방관(강관)	전면교체	15	100	
	(7) 난방관(동관)	부분수선	10	5	
	(8) 난방관(XL, PVC관)	전면교체	25	100	
	(9) 자동제어 기기	부분수선	10	5	
		전체교체	20	100	
나. 급탕설비	(1) 순환펌프	부분수선	5	10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적용 (전 동기 포함)
		전면교체	10	100	

	(2) 급탕조	전면교체	15	100	
	(3) 급탕관(강관)	전면교체	10	100	
	(4) 급탕관(동관)	부분수선	10	5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년)	수선율(%)	비고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 시설	(1) 콘크리트포장	부분수리	10	50	
		전면수리	20	100	
	(2) 아스팔트포장	부분수리	10	50	
		전면수리	15	100	
	(3) PVC 피복	전면수리	30	100	
	(4) 울타리	부분수리	5	25	
		전면교체	20	100	
	(5) 어린이놀이시설	전면교체	15	100	
		부분수리	5	20	
	(6) 보도블록	부분수리	3	10	
		전면교체	10	100	
	(7) 정화조	부분수리	5	15	
	(8) 배수로 및 맨홀	부분수리	10	10	
	(9) 공동구, 저수조 방수	부분수리	5	5	
	(10) 현관입구·지하 주차장 진입로 지붕	전면교체	15	100	
	(11) 자전거보관소	전면교체	10	100	
	(12) 주차차단기	전면교체	10	100	
	(13) 조경시설물	전면교체	15	100	
		부분수리	5	20	
	(14) 안내표지판	전면교체	5	100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text{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frac{\text{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text{총공급면적} \times 12 \times \text{계획기간(년)}} \times \text{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행 2014.5.7.]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

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6.17.]

< 도서관법 시행령 >

[별표 1] <개정 2009.9.2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	----------	----------	------------	-----------

-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나.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 비고: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해당 사항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및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② 당사자 또는 검사는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하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제29조(법원직원의 제척 등)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법원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심문 등) 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①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34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탐지·소환 및 고지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35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38조(항고) 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0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제41조(재판비용) ①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과태료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

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개정 2011.4.5>

④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제45조(이의신청)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46조(이의신청 방식)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의신청 취하) 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의 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취하서를 제46조제1항에 따른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4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한 뒤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취하서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

다.

제48조(이의신청 각하)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1.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자료제출 요구) 법무부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

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중전 제55조는 제57조로 이동 <2011.4.5>]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4.5]

제57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1.4.5>]

부칙 <제10544호, 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재판 집행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한 과태료 재판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 그 밖의 참고사항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안)

1. 목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총량제 주요내용

- ① (개념)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설치면적 대신에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
 - 동시에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무설치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②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총량제 적용(제55조의2제1항)
- ③ (주민공동시설 종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제2조제3호)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관(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놀이공간, 유아놀이방, 다목적 교육공간 등 거주자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함
- ④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2항)
 -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5항, 제8항)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

업체확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7조제9항)

-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량제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은 총량제를 적용함(제7조제10항)

3. 총량제의 운용

- ① (총량면적)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의 최소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름(제55조의2제1항)

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text{= } 2.5\text{m}^2 \times \text{세대수})$$

나.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text{= } 500\text{m}^2 + 2\text{m}^2 \times \text{세대수})$$

- ② (총량면적의 산정)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하여 산정(실외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실외체육시설 등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면적으로 함)(제55조의2제2항)

- ③ (총량면적의 조정) 지역의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표1>과 같이 총량면적의 1/4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함(제55조의2제1항 단서)

<표1. 총량면적의 조정범위>

세대수	법정총량면적	조례로 조정 가능한 총량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수×2.5m ²	완화하한	1.875m ² ×세대수
		강화상한	3.125m ² ×세대수
1,000세대 이상	500m ² +(세대수×2m ²)	완화하한	375m ² +(1.5m ² ×세대수)
		강화상한	625m ² +(2.5m ² ×세대수)

- ④ (의무설치 시설)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표2>와 같이 의무설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함

<표2. 의무설치 시설>

세대수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⑤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은 <표3>의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상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5항)

및 제6항)

〈표3. 최소면적 기준〉

가.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나.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라.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마.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⑥ (추가 설치 주민공동시설 및 면적 규정) 법정 의무설치 시설 이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할 세대수별 설치 시설과 이에 대한 설치면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4항 및 제6항) 다만, 이 경우 지역 내 수요 등에 비해 과다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정함

4.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대통령령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시행일인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7 월 8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함에 있어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보궐위원 모집 시기 등을 명문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항, 제2항)

※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나. 위원회 위원 중 각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은 다른 동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촉의 사유로 신설(안 제12조 제3항 제1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 년 7 월 28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031-8075-217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제3항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른 동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소관과		행정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화
	팀 장 성 명	예산관리팀장 홍 길 표
	담 당 자 성명·전화	권용환 (8075-217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u>제7조의 규정에 따라</u> 시장이 수립한 주민 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제출) ----- ----- <u>제7조</u> ----- ----- -----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촉과 임기) ① <u>제11조 제3항에 따라</u> 위촉된 위원 <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12조(위원의 위촉·해촉과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u> <u>위원의 임기는 위촉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u>
<신 설>	②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u> 1. <u>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u> 2.~5. (생략)	③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u> 1. ----- ----- <u>다만,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u> <u>위촉된 위원은 다른 동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u> 2.~5.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고양시 고시 제2014 - 203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8.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03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7.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6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627번길 103	20100126	호국로 시점에서 6270m에 위치 한 도로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1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1길 13-7	20120601	옛 지명 세수리마을과 슬개마을 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7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25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45-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2로 23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45-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2로 21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685-8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10-4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56-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1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955, 1954-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217-20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774-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7-3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774-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7-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774-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7-1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77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7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 월 8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192-6 외 6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7.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 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65-2, 165-4, 165-5, 16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65-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92-6	2014-07-08	건물분할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65-2, 165-4, 165-5, 165-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65-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92-12	2014-07-08	건물분할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993, 993-1, 993-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993, 993-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353	2014-07-08	도로명주소 중복 (송산로 353)	
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993, 993-1, 993-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99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355	2014-07-08	도로명주소 중복 (송산로 353)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2-1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대길 44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수길 212	2014.7.8.	도로명주소 착오부여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57-4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먹절길 282-8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먹절길 302-100	2014.7.8.	도로명주소 착오부여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993, 993-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35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353	2014.7.8.	도로명주소 중복(송산로 355)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9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9	2014.7.8.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도시계획과(☎8075-3096 ~ 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7.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외 2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1-18번지 일원 및 덕양구 신원동 216-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외 2개소)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8075-314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4. 7. 8 .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1-18번지 ~신원동 216-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 칭 : 1공구)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 대로2-1호, 광장42)

2공구) 도시계획시설(철도4)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 분	위 치	결 정		시 행		비고
		연장, 폭원	면적(m ²)	연장, 폭원	면적(m ²)	
대 로 1-11호선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일원	L=8,969m B=35~70m	-	L=391m B=35	15,719	
대 로 2-1호선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신원동	L=2,313m B=30~85m	-	L=776m B=30~30.2m	48,237	
계					63,956	

○ 도시계획시설(광장)

구 분	위 치	결 정		시 행		비고
		연장, 폭원	면적(m ²)	연장, 폭원	면적(m ²)	
광장42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일원	-	213,263	-	219	

○ 도시계획시설(철도)

구 분	위 치	결 정		시 행		비고
		연장, 폭원	면적(m ²)	연장, 폭원	면적(m ²)	
철도4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일원	-	-	L=551.8m 단선	8,369m ²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초교길45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1공구) 대로1-11호선, 대로2-1호선, 광장42호 : 2008.10.28. ~ 2014.06.30..
- 2공구) 철도 4 : 2008.10.28. ~ 2014.06.30.

○ 변경)

- 1공구) 대로1-11호선, 대로2-1호선, 광장42호 : 2008.10.28. ~ 2014.12.31.
- 2공구) 철도 4 : 2008.10.28. ~ 2014.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바”항과 같음.

2) 관계도서 : “계재생략”(열람장소 비치)

고양시 고시 제2014-20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우리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9번지 일원에 이마트(주)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대로3-41호선:가감속차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사유로 실시계획(변경)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하고, 같은법 제25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44)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8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 작성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대로3-41호선41호선)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규 모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대로	3	41	25	3,758	64,034.4	대로3-27 식사동 1465-	대로1-10 중산동 1768	
변경	대로	3	41	25	3,758	64,192.2	대로3-27 식사동 1465-1	대로1-10 중산동 1768	지적측량 결과반영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성수동 2가)
- 성명 : 주식회사 이마트 대표이사 김해성, 이갑수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4.08.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	일산동구 중산동 1809	대	11,219.8	157.8	(주) 이마트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33-16	-	-	-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도시계획시설(대로1-9호선 내 지하차도신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10-141호(2010.7.2), 고양시 고시 제2012-133호(2014.5.3), 고양시 고시 제2012-288호(2012.11.8), 고양시 고시 제2013-12호(2014.1.10), 고양시 고시 제2013-191호(2013.6.25), 고양시 고시 제2014-1호(2014.1.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되어 시행 중인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78-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1-9 호선 내 지하차도 신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4. 7. 8.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의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78-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 칭 : 고양 삼성지구 주변도로 건설사업[도시계획시설 (대로1-9호선 지하차도)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설명	위 치	지하차도 연장 및 폭원 (내정기준)	비고
대로1-9호선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78-6일원	L=441.6m, B=17.6m	기존 도로구간 내 지하차도 신설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초교길45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인가일로부터 2014. 6.30.

○ 변경) 인가일로부터 2014.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조서참조”(변경없음)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항 “바”항과 같음

2) 관계도서 : “계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변경없음)

탄현주공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7-5139(2007.10.22.)호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제2011-111호(2011.07.1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탄현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7. 08.

고 양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칭 : 탄현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75 탄현주공주택재건축아파트
- 면 적 : 24,981.50 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탄현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진광식
- 조 합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80, 301호(일산동,성동빌딩)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일자 : 2014. 07. 07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대지면적 : 23,727.8m²
 - 건축면적 : 5,654.97m² (건폐율 : 23.83%)
 - 연 면 적 : 87,036.11m² (용적률 : 249.82%)
 - 지하면적 : 26,258.04m²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층수(최고높이) : 지하2층~지상24층 (67.8m)
- 주 차 장 : 716대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대지면적 : 23,727.80㎡
- 연 면 적 : 87,036.11㎡
- 세 대 수 : 아파트 589세대

(조합원분 393세대, 일반분양 178세대(보류시설 3세대포함), 임대 18세대)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정 비 기 반 시 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 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구역내)	293.5	조합	조합/기부채납
			도로(구역내)	461.3	조합	조합/기부채납
			공공용지	493.5	조합	조합/기부채납
			도로(구역외)	619.2	조합	조합/기부채납
			도로(구역외)	755.0	조합	조합/기부채납
			도로(구역외)	63.0	조합	조합/기부채납

6. 기타

관계도서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내역은 고양시청 뉴타운사업과 및 탄현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공 고

고양시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및 등록)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공인을 동 조례 제12조(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의 명칭	신규인영
민원사무 고양시덕양구능곡동장인 전용	

2. 공인의 등록 사유 : 인증기 신규 취득에 따른 훈민정음체 공인 등록
3. 최초사용 연월일 : 2014. 7. 23.
4. 공고기관 : 고양시 덕양구청장

2014. 7. 8.

고양시 덕양구청장

공 고

고양시공인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및 등록)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공인을 동 조례 제12조(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의 명칭	신규인영
민원사무 고양시덕양구신도동장인 전용	

2. 공인의 등록 사유 : 인증기 신규 취득에 따른 훈민정음체 공인 등록
3. 최초사용 연월일 : 2014. 7. 23.
4. 공고기관 : 고양시 덕양구청장

2014. 7. 8.

고양시 덕양구청장